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601
----------	-------

발의연월일 : 2026. 3. 19.

발 의 자 : 백혜련 · 이수진 · 김원이
이주희 · 윤종균 · 송재봉
박지원 · 전현희 · 민홍철
부승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촬영물 등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경우에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불법촬영물 등의 수요확대, 나아가 산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광고·소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광고·소개 행위까지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처벌대상이 되는 “반포등”의 행위에 불법촬영물 배포 등 목적의 광고·소개 행위를 포함하여,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수요확대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법률 제 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상영”을 “상영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u>상영</u> (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 ⑤ (생략)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상영하</u> <u>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u> <u>개</u> ----- ----- ----- ----- ----- ----- ----- ----- ----- ----- ③ ~ ⑤ (현행과 같음)